

# 댓글의 자유와 악플의 책임



글 박형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악성댓글, 즉 악플의 폐해와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 연예인에 관한 댓글을 읽어보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이 문득 생각난다. 악플들을 한발 떨어져 읽어봐라. 인간의 본성은 확실히 악하다.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옛 성인들은 신독(慎獨)이라 하여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은 인간의 악성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 무기명의 힘, 익명성이 지닌 매력은 인터넷을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 그런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룬 형사고소사건과 판례 하나를 통하여 댓글의 자유와 한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요즘 악성댓글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은 치기 어린 소년, 소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 어쩌면 더 심하다. '닥플(<http://www.docple.com>)'이라

는 사이트가 있다. '닥터플라자'의 약어로 의사 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이 닥플에 관련된 기사 몇 개의 헤드라인을 보자. 「여자의사회, '닥플' 익명게시판은 인격 살인의 장」 익명게시판 실명전환 및 피해 여의사들에 공개사과 요구(2012년 1월 기사), 「닥플, 의사 사이버공간은 윤리적 진공상태, 충북의사회 성명...회원간 사이버테러, 언어폭력 재발방지 촉구」(2012년 4월 기사), 「서울중앙지법, 의사포털 닥플에 수색영장 발부, 김선민 의원 욕설글 게시판 6명 신분확인목적」(2012년 8월 기사). 이렇게 헤드라인만 뽑아도 짐작은 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내가 직접 다룬 닥플에서 벌어진 의사들 사이의 분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의과대학 교수인 친구가 의사들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글, 상업화하는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썼다. 그러자 많은 젊은 개업의가 닥플 익명사이트에 그 친구의 글에 비분강개하여 모욕적, 명예훼손적, 신상털기의 글을 쏟아냈다.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전화도 빗발쳤다.

**Docple**® 공감-共感  
Medical Opinion Leader

닥플은 의사 전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입니다.

광고 및 제휴 | 웹마스터 | 둘러보기 | 닥플마켓

아이디  ID/PW찾기   
비밀번호  회원가입하기

- **의사회원**: 의사면허 인증절차 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대생회원**: 학생증 인증절차 후 자료실, 뉴스, 닥플마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회원**: 인증절차 후 의뢰기, 부동산 등 제한된 공개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ANALL BIOPHARMA**  
한울 바이오파마  
국내 1위, 전세계 38위  
2009.7 Pharma Projects  
세계 제약기업 50위 선정

의사전문 대표소핑물 닥플마켓과 함께해요

**Docple**®  
상호명 : (주)핸즈앤브레인 (사업자등록번호 : 120-86-77165)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8 (논현동 87-3) 우신논현빌딩 6층  
TEL.02-558-7972 HP.010-9995-0213 FAX.02-501-7972  
Copyright(c) 2000~ Hands&Brain Inc 대표 최윤석, All rights reserved

**KISA**  
대한의사협회

닥플 홈페이지(<http://www.docple.com>) 메인화면 (2014. 3. 20 접속)캡처

업무마비를 넘어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그 친구는 나에게 대처를 요청했고 내가 닥플에 내용증명을 보내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닥플 관계자는 다행히 즉각적으로 수용했고, 친구와 나는 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 악의적인 글을 쓴 몇 명을 골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그 후 몇 명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와 고소를 취하했고, 조직적인 몇 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고소를 유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게 했다.

내 친구의 의도는 닥플 익명사이트의 윤리적 진공상태를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골만 깊어진 느낌이다. 의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견해차, 대립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확신범(確信犯)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과는 구별되어 과연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댓글이 있다. 사업장, 영업장에 대한 평가의 글들이 그렇다. 법률적

으로는 이러한 인터넷(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이 전파성이 높은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보고, 비방한 사람이 기소되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은 사건(2012도10392호 판결)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준을 제시하여 소개한다.

분쟁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후기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250만 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26일 6시 17분경부터 같은 달 30일 01시 29분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의 신중한 산후조리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후기에 올리겠다는 피고인의 항의에 피해자 측(산후조리원)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피고인의 이용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에 대해서 카페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카페 회원들이 신생아실에서 언성을 높인 피고인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당신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겠는가, 아니면 이 정도의 비판은 허용할 것인가.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원심은 명예훼손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재판부가 피고인을 우호적으로 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이용후기는 실제 산후조리원을 사용한 사람이 실제 겪은 일을 올린 것이고, 그에 더하여 주관적인 평가를 올린 글이었다.

둘째, 피고인이 당연히 불만이 있었으므로 과장은 존재하였지만,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은 상당 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였다.

셋째, 이용후기를 올리면서 동기를 명백하게 밝혔다. “내가 이 사이트를 보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데 사용하여보니 아니었다. 그래서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동기가 명확했다는 것이다.

넷째, 반복적으로 올린 것이 문제이나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글을 삭제하니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만방에 비방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유명 산후조리원 사이트나 피고인의 블로그에만 올려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이 한정되었다.

여섯째, 모든 관계에는 궁합이 있는 것인데 산후조리원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곳의 서비스에 만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이런 불만도 어느 정도 참아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후기가 산후조리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용후기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의견제공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할 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사유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종합적인 판단이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위의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의

손의 주요표지인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만, 실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 비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정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판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벌금을 각오한 댓글의 예를 들었다.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악플을 올린다. 이들을 우리가 동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된다.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의 우리 피고인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선의에 관심을 가져준 것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판결이라 생각한다.